

# 공 사 시 방 서

공사명 : 관내 하수박스 준설공사

2015. 05.

**강남구청 치수과**

# 일 반 시 방 서

## 제1장 총 칙

### 1. 적 용 범 위

- (1) 본 지방서는 강남구 『관내 하수박스 준설공사』에 적용한다. (이하 작업이라 한다)
- (2) 도면 및 특별지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본 지방서에 우선한다.
- (3) 일반지방서, 특별지방서 및 설계도서에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한다.

### 2. 용어의 정의

본 지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에 의한다.

- (1) “지시”는 우리구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감독원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, 기준,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“승락”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.
- (3) “협의”는 감독원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3. 법령등의 준수

- (1) 도급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에 열거하는 법률 및 기타의 관계법령, 조례 규칙등과 우리구와 타기관(공사)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  - (가) 근로 기준법
  - (나) 도로법
  - (다) 하수도법
  - (라) 건축법
  - (마) 도로교통법
  - (바) 하천법
  - (사) 환경보전법
  - (아) 폐기물관리법
  - (자) 문화재보호법
  - (차) 건설업법
- (2) 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제 법령 등의 운용, 적용은 도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진다.

#### 4. 수송절차 및 제출서류

- (1)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도로사용, 작업중의 도로교통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(발주자가 할 수도 있다)
- (2)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아래서류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 착수한다.
  - (가) 현장대리인계 및 기술자 명단
  - (나) 착공계
  - (다) 공정표
  - (라) 도급내역서
  - (마) 시공계획서
- (3)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계를 제출한다.
- (4) 도급자는 일보를 매일 우리구가 지시하는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할 것
- (5) 작업이 완료된 경우 즉시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(가) 준공계(작업완료 보고서)
  - (나) 작업기록 사진(전, 중, 후)
  - (다) 준공도서(위치도)
  - (라)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

#### 5. 현 장 체 제

- (1) 도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소정의 업무에 종사 시켜야 한다.
- (2) 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.
- (3) 도급자는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- (4) 낙찰자(도급자)는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흡입준설장비(세정차 포함)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.

#### 6. 작업시 주민과의 협조

- (1) 도급자가 작업시 인근 주민등과 협의를 필요로 할 때,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(2)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해서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 
※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.

## 7. 피해 보상 및 배상

- (1) 도급자는 하수도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다.
- (2) 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.

## 8. 공정 관리

- (1) 도급자는 착공계에 첨부된 공정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.
- (2) 공정관리는 실시 공정표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한다.
- (3) 예정작업 공정과 실적에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작업이 진행 되도록 한다.
- (4) 매월말 작업실적 보고서를 작성 작업의 진척 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- (5) 작업현장 형편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작업 내용, 작업시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낙을 받는다.

## 9. 작업기록 사진 제출

- (1) 도급자는 작업상황 사진을 촬영 후 감독원에게 제출 승낙을 받는다.  
또한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필요 작업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# 제 2 장 안 전 관 리

## 1. 안전설비 설치 및 현장관리

- (1)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.
- (2)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한다.
- (3)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
## 2. 작업원의 안전관리

- (1) 도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, 체류하는 유독가스, 혹은 산소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
- (2)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3)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여 완전한 정비를 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중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 제 3 장 준 설 작 업

### 1. 일 반 사 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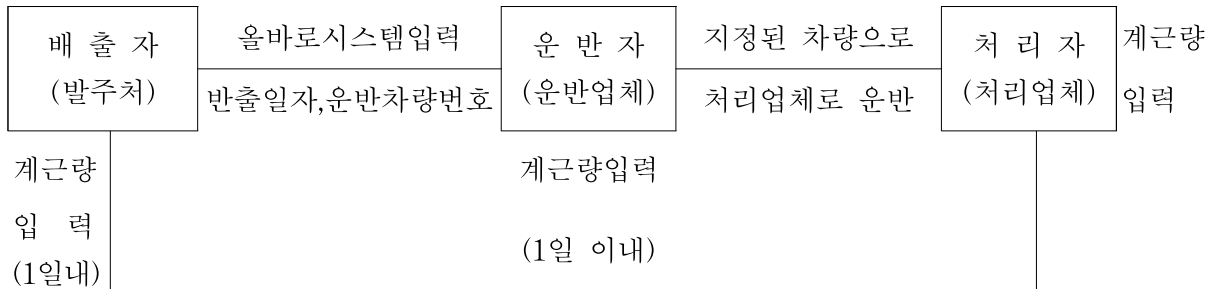
- (1) 도급자는 작업 장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로라 등을 사용 보호조치를 하여, 하수도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한다.
- (3) 물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을 완전히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.
- (4) 도급자는 작업시 현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, 진동방지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.
- (5)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.
- (6) 작업시 도로 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.
- (7) 작업완료 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.
- (8) 하수박스 내부를 CCTV 카메라(또는 사진촬영)로 촬영하여 준설 확인, 하수관 침하 파손,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 시설 등의 위치에 대한 조사를 전체 연장의 10% 이상 실시한다.

### 2. 준설작업

- (1) 작업시간 : 간선도로 중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는 가급적 흡입식 준설차로 야간 작업을 하여 교통 체증을 방지한다.
- (2) 토사의 유하방지 :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.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토사를 제거한다.
  - (가) 수분이 다량인 준설토에 대해서는 탈수 등의 조치를 하여 운반도중 흘리지 않도록 한다 (중간집하장 활용)
  - (나) 운반차량은 토사의 유출, 비산 및 악취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구조의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.

(3) 준설토 처리

- (가) 중간적치장으로 반입되는 준설토 및 재활용업체에 반출시 시료를 채취 반복적인 함수비 시험을 실시하여 함수비 평균치를 산출하여 준설량 확인(품질시험소 의뢰)
- (나) 중간적치장에서 준설토 반출시 발주처에서 폐기물처리시스템(올바로시스템)에 준설토 반출일자,운반차량번호를 현장 확인후 입력하면 운반업체에서 중간적치장에 있는 자연건조된 준설토를 준설토 처리업체(재활용)로 운반한다.
- (다) 준설토 계근은 김포수도권매립지(또는 재활용업체)에서 자체 설치한 계근장치를 활용하여 계근일자, 계근량, 차량번호 확인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추후 정산시 발주처에 제출한다.
- (라) 준설토 계근량을 처리업체에서 입력하면, 발주처, 운반업체에서는 계근량을 확인후 폐기물처리시스템 입력을 익일까지 완료토록함.



(4) 세정수

- (가) 작업에 필요한 세정수는 소방서 급수탑 소화전 및 유출지하수 등을 이용한다.

(5) 이상시 조치

- (가) 준설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.
- (나)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 침하, 노후 등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한다.

(7) 도급자는 준공검사시 하수도 준설 관망도를 작성 제출한다.

(사용도면 하수도 전산관리시스템 1 : 650)

## 제 4 장 하수도 관거내 조사작업

### 1. 조 사 작 업

- (1) 작업시 도로사용 허가조건을 엄수하여야 한다.

(2) CCTV 조사

- (가) 조사는 준설작업 완료시 즉시 시행하여, 정밀도를 제고한다.
- (나) 하수관거 조사시 연결부의 불량, 파손, 침입수, 연결관 돌출 유수장애물 등에

주의하여 촬영(칼라)하고, 필요 장소에 있어서는 즉시 촬영(칼라)하여 선명한 화면이 되도록 할 것

(다) 본 관내의 불량개소 및 연결관로 돌출의 불량개소의 위치표시는 상류측 맨홀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것.

(라) 관내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는 모니터에서 사진촬영(칼라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(마) 조사 구간내의 맨홀 위치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다.

### (3) 실측에 의한 조사

실측에 의하여 조사할 때엔 본 관내에 조사원이 들어가 관거의 시설 연결부상태, 관파손, 연결관 돌출, 침입수 및 맨홀 파손으로 유출장애시설 불량개소를 조사하여 사진촬영(칼라)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조사내용은 CCTV조사방법에 준한다.

## 2. 보고서 작성

(1) 조사 결과는 별첨양식 2, 3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.

(2) 조사결과를 CCTV 모니터 칼라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한 경우는 지정된 일반용 비디오테이프에 수록하여 제출한다.

(3) 조사결과의 판단기준은 별표 - 1에 의한다

(4) 조사결과 성과품은 우리구의 승낙없이 공표해서는 안 된다.

(5) 납품할 도서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(가) 관로 CCTV 카메라 조사보고서 1부.

(나) 불량개소 사진첩

(다) 현지조사 CD제출 1부.

(라)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

## 3. 기 타

(1) 작업완료

- 조사작업을 완료하고 소정의 성과품이 제출된 이후 우리구 검사원이 검사가 완료된 상태

(2) 검 사

- 하수도 준설 검사와 동일

(3) 관거내 조사작업 보고서 기재 요령

(가) 일반사항

보고서는 아래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

- 1) 양식은 A4(21.0×27.0) 횡서로 사용하고 도면은 축척을 표시하여 제작
- 2) 표지에는 작업건명, 도급자명, 공사기간 등을 기입한다

(나) 기재사항

하기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기입한다

1) CCTV 조사

- 조사목적
- 조사개요
- 안 내 도
- 조사 위치도
- 조사 총괄표
- 조사 집계표 (양식 2)
- 조사 기록표 (양식 3)
- 조사의견
- 작업 기록사진 및 비디오테이프

2) 실측조사

- CCTV 조사 항목에 준수한다

(다) 조사기록표 및 집계표 기입표시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범 | 례        |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  | 관        | :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철 | 근        | :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  | 관        | :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  | 빗물받이(우수) | :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| 맨 | 홀        | : |



## 제 5 장 기 타

### 1. 작업의 완료

-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준설토는 반드시 관거밖으로 반출하여 준설토 중간적치하여 탈수 조치 후 김포수도권매립지 또는 재활용업체로 반출한다.

### 2. 검 사

- (1)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.
- (2)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, 사진, 준공도서, 잔토처리 반출증 및 계근장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 
다만, 불완전한 장소가 있을 때에는 재 시행토록 하고, 재시공시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.

### 3. 규정이외의 사항

- (1) 계약서, 지방서 및 설계도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
- (2) 기타,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.